

# 대신대학교 학칙시행 내규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본 시행내규는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등록·휴학·복학 및 재입학

**제2조(등록절차)** ① 학생은 매학기 초 정한기한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.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. 등록절차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 끝난다.

②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
가. 학기개시일 전 : 등록금 전액 반환

나.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: 등록금 5/6 해당액

다.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: 등록금 2/3 해당액

라.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: 등록금 1/2 해당액

마.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: 반환하지 않음(개정 2011.04.01.)

③ 등록금을 대체인정 받은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에는 휴학당시 수업한 일수와 복학하여 자퇴 신청 시까지 수업한 일수 중에서 수업일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2항에 의거 반환한다.

**제3조(휴학)** ①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 휴학으로 구분된다.

1. 일반휴학 : 가. 가사사정으로 인한 휴학

나. 질병으로 인한 휴학 : 진단서 첨부

다.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 : 학과장 동의서 첨부

라. 임신과 출산, 육아로 인한 휴학 : 임신과 출산 및 육아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첨부(신설 2017.01.01.)

2. 군 휴학 : 입영 통지서 첨부

② 일반휴학중인 학생이 군 입대 하게 될 경우 : 군 입대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휴학사유를 변경하여야 한다.

**제4조(휴학기간)** ① 일반휴학의 기간은 1학기 또는 2학기 단위로 하며, 재학 중 3회에 한한다.(개정 2018.11.01.)

② 군 휴학은 군복무 기간으로 한다. 단, 병역 의무기간은 휴학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③ 임신과 출산, 육아로 인한 휴학은 ①항의 규정에 의한 휴학 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. (신설 2017.01.01.)

**제5조(휴학절차)** ① 학생이 질병, 군 입대, 임신, 출산, 육아로 인한 휴학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어 휴학을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 2/3 이내에 휴학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휴학할 수 있다. 단, 휴학사유가 질병 및 군 입대 제외하고는 수업일수 2/3이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.(개정 2017.01.01.)

② 재학생 및 일반휴학자 중 입영영장을 받은 학생은 입영 1주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 입대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신입학년도 제1학기에는 질병 및 군 입대, 임신과 출산, 육아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는 휴학을 허락하지 아니한다.(개정 2017.01.01.)

**제6조(휴학명령)** 학기 개강 후 5주 이내 등록을 못할 경우 휴학을 명할 수 있다.

**제7조(등록금 인정)** 휴학신청 시기에 따른 복학 시 등록금대체 인정은 다음과 같다.

1. 일반휴학

가. 해당학기 수업일수 1/3선 이전 신청자 :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

나. 해당학기 수업일수 1/3선 익일부터 1/2선까지 신청자 : 등록금 반액 대체 인정

다. 해당학기 수업일수 1/2선 익일 이후 신청자 : 등록금 소멸

2. 군 휴학 :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

단, 해당학기 수업일수 2/3선 익일부터 정기시험 종료일 이전까지 군 휴학 신청자 중 성적취득을 희망한 경우에는 등록금이 소멸된다.

**제8조(군 휴학생의 성적 인정)** 수업일수 2/3가 경과한 후 군 휴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담당교수는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하여야 한다.

**제9조(복학)**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때와 휴학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한하여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학기초 15일 이내에 복학할 수 있다.

② 군복무 만료로 복학하는 학생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첨부하여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된다.

**제10조(재입학)** ① 자퇴 또는 미등록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락할 수 있다. 단, 징계처분 받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.

② 재입학은 제적당시 학과 및 학년 이하에 한한다. 단, 과거의 학업성적을 사정하여 학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재적하였던 학과(전공)가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학과 등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## 제3장 전과

**제11조(전과기준)**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2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개시 전 30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.(개정 2018.03.01.)

**제12조(전과 방법)** ① 총장은 전과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개시 전 학과별 예정인원과 접수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.

② 전과 신청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을 행할 수 있다.

**제13조(전과의 절차)**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**제14조(전과의 제한)**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전과할 수 없다.

1. 야간에서 주간 학과로의 전과
2. 편입학한 자(단, 편입생은 3학년 2학기 개시 전 전과 신청 가능)
3. (삭제 2018.03.01.)

**제15조(이수과목 및 학점)**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입된 학과(부)의 전공소요학점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. 이미 취득한 전공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하고, 전과 전에 취득학점 중 전입된 학과(부)의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.(개정 2018.03.01.)

## 제4장 수강신청

**제16조(수강신청)** 학생은 매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과목을 온라인 전산시스템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1. 수강신청은 타 학과의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.(개정 2019.04.01.)
2. (삭제 2019.04.01.)
3.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그 학기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.
4.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.
5.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부 교과목의 수강을 불허하거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.
6. 최대학점을 초과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택과목 취득학점을 우선으로 무효 처리한다.

**제17조(학기당 수강학점)** 매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다음과 같다.

(개정 2013.03.01., 2014.09.01., 2017.03.08.)

| 학번 기준             | 수강신청 학점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| 최소 신청 학점 | 최대 신청 학점 |
| 2012학번까지          | 18학점 이상  | 22학점 까지  |
| 2013학번부터 2016학번까지 | 17학점 이상  | 20학점 까지  |
| 2017학번부터          | 15학점 이상  | 18학점 까지  |

1. 4학년의 최소 수강신청 학점은 1학기 9학점, 2학기 6학점으로 한다.(단, 2013~2016학번까지는 1학기 13학점, 2학기 7학점, 2012학번까지는 1학기 15학점, 2학기 9학점으로 한다.)
2. 매 학기 9학점(2013~2016학번까지는 13학점, 2012학번까지는 15학점) 미만을 취득한 학생은 각종 장학금 및 우등생 표창에서 제외된다(단, 4학년 2학기 6학점 미만).
3. 재이수과목 학점을 포함하여 18학점(2013~2016학번까지는 20학점, 2012학번까지는 22학점)을 초과할 수 없다.(개정 2017.03.08.)
4. 총 성적 평균평점이 3.5이상인 학생은 2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.(신설 2017.03.08.)

**제17조의 2(학기당 최소이수학점)** ① 학기당 최소이수학점은 8학점 이상으로 한다. (단, 2013~2016학번까지는 10학점, 2012학번까지는 12학점으로 한다.)

② 4학년 2학기는 학기당 최소이수학점을 6학점으로 한다.

**제18조(폐강)** 수강신청 학생수가 10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. 단, 학과(부)의 사정 또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강할 수 있다.  
(개정 2011.04.01.)

**제19조(시간중복 수강신청 금지)**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무효로 한다.

**제20조(수강신청 변경)** ① 수강승인이 된 교과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 정정을 할 수 없다.

② 수강신청 완료 후 강의시간의 변경, 폐강, 기타 정당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정정을 할 수 있다.

**제20조의 2(수강 포기)** ① 수강신청한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1/3선 이내에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, 학부(과)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포기할 수 있다.(신설 2012.07.01.)

② 수강 포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강포기제 운영 규정에 의한다.(신설 2012.07.01.)

**제21조(중복수강 금지와 학점포기)** ① 동일명칭의 교과목은 그 성적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②(삭제 2014.09.01.)

**제21조의 2(재이수 신청)** ①기 취득한 과목의 성적이 C+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이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재이수신청서를 수강신청(정정) 기간 내에 교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.(신설 2014.09.01.)

②성적사정 후 기 취득한 성적과 재이수하여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만을 인정하여 성적표에 기재 한다.(신설 2014.09.01.)

**제22조** (삭제 2014.09.01.)

## 제5장 성적의 평가

**제 23조(성적평가)** ① 성적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, 추가시험 및 출석, 과제물 등 을 종합 평가하여 인정하며 총 강의 시간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성적평가에서 제외된다.

② 학생처장이 승인하는 공식 행사에 참가하는 학생은 출석 인정서를 제출하게 하여 행사 참가 기간 중 해당 교과목 강의시간의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.

③필수과목을 낙제했을 경우 차 학년 동일 학기에 동일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.(개정 2014.09.01.)

④ 재 이수 교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동일과목으로 이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체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폐강 등의 사유로 대체과목을 이수할 수 없을 경우 해당학점수 만큼 다른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.(개정 2011.04.01.)

⑤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. 다만, 착오(오기, 누락)에 의하여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성적정정원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답안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정할 수 있다.

⑥ 담당부서에서 인정하는 운동부에 소속되어 공식적인 단체의 리그에 참여하거나 훈련중인 학생들의 성적평가는 학생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교과목 교원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평가의 방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며, 성적등급도 절대평가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.(개정 2021.03.01.)

**제23조의 2(성적환산)** 성적은 평점과 백분위 점수를 적용한다. 백분위 평균을 산정할 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.(단, 백분위 점수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) (신설2014.9.1.) (개정 2018.11.05.)

**제24조(성적평가 등급)** 성적평가는 A등급 이상이 50%를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, 수강인원이 10명 미만 및 실험·실습, 실기 교과목은 학과의 학문적 특성에 따라 학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 단, 사회적 재난 및 재해, 천재지변, 전염병이 창궐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결의로 성적평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0.10.01., 2014.09.01., 2023.05.02)

| 구분 | A     | B  | C | D | F |
|----|-------|----|---|---|---|
| 교양 | 0~50% | 자율 |   |   |   |
| 전공 | 0~50% | 자율 |   |   |   |

**제 25조(성적의 등록)** ① 성적이 C+ 이하인 과목의 경우 재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.(개정 2014.09.01.)

② 평균평점이 동점일 경우

1. 취득학점이 많은 순서
2. 최고의 성적이 많은 순서로 처리한다.
3. 필수 학점의 평점이 높은 순서로 처리한다.

**제26조(성적취소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.

1.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수한 과목의 성적
2. 학점이수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과목을 중복 이수한 성적
3.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자의 성적

**제 27조(성적이의)** 해당학기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정한 기한 내에 성적이의를 신청하여 수정할 수 있다.

**제 28조(추가시험)** ① 병역,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학생은 시험기간 전에 과목 담당교수의 확인 후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허가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중간 또는 기말시험의 추가시험을 인정하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③ 전공실기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 내에 담당교수별로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 단,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## 제6장 경건회

**제29조 (경건회)** 본 대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재학생은 교내 예배에 참석하여야 하고, 이를 예배학점으로 취득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예배학점은 8학기를 Pass해야 하며, 편입생은 편입 후 잔여학기를 Pass하여야 한다.
- ② 예배학점을 Pass하지 못한 자는 해당학기 기말고사 후 실천처에서 실시하는 경건훈련 및 기타 봉사에 참석하여 Pass하여야 한다.
- ③ 세부적인 사항은 예배학점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한다.

## 제7장 성적 경고

- 제30조(학사경고)** ① 재학 중 매 학기 성적이 평균평점이 1.5 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.(개정 2019.04.01.)
- ② 제1항에 의해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(삭제 2019.04.01.)
- ③ (삭제 2011.10.01.)
- ⑤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한 후 통산 2회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한다.

## 제8장 유급제도

- 제31조(유급제도)** ① 성적불량자 중 학업성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학력을 보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유급을 시킬 수 있다.
- ② 1, 2 학기 계속 각 8학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유급 시킬 수 있다. (단, 2013-2016학번은 10학점).(개정 2018.03.01.)
- ③ 동일학년 1,2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당학기만 유급처리하며, 기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.(개정 2014.09.01.)
- ④ (삭제 2019.04.01.)
- ⑤ 유급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해당 학기 초 유급 처리원을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, 복학 시 유급자 복학원을 작성, 교무과에 제출하고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## 제9장 편입생에 대한 학점 인정

- 제32조(학점인정)** ① 편입자의 인정학점은 본교 학년별 수료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전적대학의 취득학점이 본교 수료학점에 미달된 경우 취득학점 수만 인정한다.
- ② 편입자는 편입학부(과)의 교육과정에 따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, 편입학부(과)에서 선수과목을 지정할 경우 지정한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동일계열로의 편입생에게는 선수과목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.(개정 2011.04.01.)
- ③ 편입학생이 취득해야할 전공필수과목은 편입인정학기부터 개설되는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(개정2011.04.01.)

④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명칭이나 학점이 편입학과(부)의 교과과정과 동일할 경우 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단, 사범계열학과의 편입생의 과목인정의 경우 반드시 현재의 전공과 일치하는 전적대학의 전공과목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인정된 과목의 성적등급 P(Pass)로 한다.(개정 2011.04.01.)

**제33조(수학기간)** 3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은 4학기 이상 수학하여야 한다.

**제34조(편입학 취소)** ① 편입학이 허가된 학생일지라도 조회결과가 부실한 경우에는 편입 취소 또는 학년을 재사정할 수 있다.

② 지원당시의 미비서류는 편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경과 시에는 편입학을 취소할 수도 있다.

## 제10장 졸업

**제35조(졸업자격)** 졸업은 4년(8학기)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,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논문(실기발표, 졸업시험 등)의 심사에 통과한 자라야 한다.  
(개정 2021.03.01.)

**제36조 (졸업학점 및 요건)**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0학점(단, 2013~2016학번까지는 130학점, 2012학번까지는 140학점)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 (개정 2013.03.01., 2014.09.01., 2017.03.08.)

②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.

1. 4년(8학기)이상 등록한 자
2. 소정의 전공 및 교양 필수과목을 이수한 자
3. 예배과목 8학기를 Pass한 자
- 4.(삭제 2014.09.01.)

## 제11장 졸업논문

**제37조(졸업논문)** ① 본교 학생으로 졸업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최종 졸업학기에 등록을 필한 자라야 한다.

② 졸업논문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각 학과별로 따로 정하며 학과에서 지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자에게 졸업논문, 졸업시험, 실기발표 등을 면제할 수 있다.

(개정 2021.03.01.)

**제38조(졸업논문대체)** ① 학부(과)에 따라 졸업시험, 실기발표 등으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.

② 졸업논문을 실기발표로 대체할 경우에는 실기예정일을 공고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토록 한다.

③ 졸업논문을 졸업시험, 등으로 대체할 경우 이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각 학과에서 따로 정한다.

## 제12장 학점등록

**제39조(학점등록)** ① 8학기(4학년 2학기) 등록을 필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는 경우 그 부족학점에 대하여 학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학점등록은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.

**제 40조(학점등록금)** 학점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7항에 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(개정 2011.04.01.)

## 제13장 제증명 발급

**제41조(증명서류의 종류)** 증명서의 종류는 졸업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, 수료증명서,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 등이다.

**제42조(발급대상 및 기준)** ① 제증명서는 졸업생, 졸업예정자, 재학생, 제적생에게 발급한다.

② 졸업예정 증명서 발급은 4학년 2학기까지의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, 4학년 1학기까지 취득한 학점과 4학년 2학기 수강 신청한 학점의 합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인 자에게 발급한다.

**제43조(학적부 정정)** 학적부에 기재된 생년월일,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학생의 인적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적부 정정원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1.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07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0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- ① 대신대학교 학칙을 전면개정으로 종전 학칙시행내규를 보완 및 수정하여 학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신 개정된 학칙시행 내규로 적용한다.
- ②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**

1. (시행일)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**

1. (시행일)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**

1. (시행일)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17조 규정과 제36조 규정은 2013학년도 입학생(편입생은 2015학년도)부터 적용한다.

#### **부 칙**

1. (시행일)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**

1. (시행일)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**

1. (시행일)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**

1. (시행일)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23조의 2 규정은 2018학년도 1학기까지 성적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표 1의 성적평점 환산기준표를 적용한다.

#### **부 칙**

1. (시행일)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**

1. (시행일)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(경과조치)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적용한다.

## **부 칙**

1.(시행일)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**부 칙**

1.(시행일)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**부 칙**

1.(시행일)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2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# 성적평점 환산기준표

2. 평점평균이 4.5 만점인 경우 : 환산점수 =  $60 + ((\text{평점평균} - 1) \times 40 / 3.5)$

| 평점   | 환산<br>점수 | 평점   | 환산<br>점수 | 평점   | 환산<br>점수 | 평점   | 환산<br>점수 | 평점   | 환산<br>점수 | 평점   | 환산<br>점수 | 평점   | 환산<br>점수 |
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
| 4.50 | 100.0    | 4.00 | 94.3     | 3.50 | 88.6     | 3.00 | 82.9     | 2.50 | 77.1     | 2.00 | 71.4     | 1.50 | 65.7     |
| 4.49 | 99.9     | 3.99 | 94.2     | 3.49 | 88.5     | 2.99 | 82.7     | 2.49 | 77.0     | 1.99 | 71.3     | 1.49 | 65.6     |
| 4.48 | 99.8     | 3.98 | 94.1     | 3.48 | 88.3     | 2.98 | 82.6     | 2.48 | 76.9     | 1.98 | 71.2     | 1.48 | 65.5     |
| 4.47 | 99.7     | 3.97 | 93.9     | 3.47 | 88.2     | 2.97 | 82.5     | 2.47 | 76.8     | 1.97 | 71.1     | 1.47 | 65.4     |
| 4.46 | 99.5     | 3.96 | 93.8     | 3.46 | 88.1     | 2.96 | 82.4     | 2.46 | 76.7     | 1.96 | 71.0     | 1.46 | 65.3     |
| 4.45 | 99.4     | 3.95 | 93.7     | 3.45 | 88.0     | 2.95 | 82.3     | 2.45 | 76.6     | 1.95 | 70.9     | 1.45 | 65.1     |
| 4.44 | 99.3     | 3.94 | 93.6     | 3.44 | 87.9     | 2.94 | 82.2     | 2.44 | 76.5     | 1.94 | 70.7     | 1.44 | 65.0     |
| 4.43 | 99.2     | 3.93 | 93.5     | 3.43 | 87.8     | 2.93 | 82.1     | 2.43 | 76.3     | 1.93 | 70.6     | 1.43 | 64.9     |
| 4.42 | 99.1     | 3.92 | 93.4     | 3.42 | 87.7     | 2.92 | 81.9     | 2.42 | 76.2     | 1.92 | 70.5     | 1.42 | 64.8     |
| 4.41 | 99.0     | 3.91 | 93.3     | 3.41 | 87.5     | 2.91 | 81.8     | 2.41 | 76.1     | 1.91 | 70.4     | 1.41 | 64.7     |
| 4.40 | 98.9     | 3.90 | 93.1     | 3.40 | 87.4     | 2.90 | 81.7     | 2.40 | 76.0     | 1.90 | 70.3     | 1.40 | 64.6     |
| 4.39 | 98.7     | 3.89 | 93.0     | 3.39 | 87.3     | 2.89 | 81.6     | 2.39 | 75.9     | 1.89 | 70.2     | 1.39 | 64.5     |
| 4.38 | 98.6     | 3.88 | 92.9     | 3.38 | 87.2     | 2.88 | 81.5     | 2.38 | 75.8     | 1.88 | 70.1     | 1.38 | 64.3     |
| 4.37 | 98.5     | 3.87 | 92.8     | 3.37 | 87.1     | 2.87 | 81.4     | 2.37 | 75.7     | 1.87 | 69.9     | 1.37 | 64.2     |
| 4.36 | 98.4     | 3.86 | 92.7     | 3.36 | 87.0     | 2.86 | 81.3     | 2.36 | 75.5     | 1.86 | 69.8     | 1.36 | 64.1     |
| 4.35 | 98.3     | 3.85 | 92.6     | 3.35 | 86.9     | 2.85 | 81.1     | 2.35 | 75.4     | 1.85 | 69.7     | 1.35 | 64.0     |
| 4.34 | 98.2     | 3.84 | 92.5     | 3.34 | 86.7     | 2.84 | 81.0     | 2.34 | 75.3     | 1.84 | 69.6     | 1.34 | 63.9     |
| 4.33 | 98.1     | 3.83 | 92.3     | 3.33 | 86.6     | 2.83 | 80.9     | 2.33 | 75.2     | 1.83 | 69.5     | 1.33 | 63.8     |
| 4.32 | 97.9     | 3.82 | 92.2     | 3.32 | 86.5     | 2.82 | 80.8     | 2.32 | 75.1     | 1.82 | 69.4     | 1.32 | 63.7     |
| 4.31 | 97.8     | 3.81 | 92.1     | 3.31 | 86.4     | 2.81 | 80.7     | 2.31 | 75.0     | 1.81 | 69.3     | 1.31 | 63.5     |
| 4.30 | 97.7     | 3.80 | 92.0     | 3.30 | 86.3     | 2.80 | 80.6     | 2.30 | 74.9     | 1.80 | 69.1     | 1.30 | 63.4     |
| 4.29 | 97.6     | 3.79 | 91.9     | 3.29 | 86.2     | 2.79 | 80.5     | 2.29 | 74.7     | 1.79 | 69.0     | 1.29 | 63.3     |
| 4.28 | 97.5     | 3.78 | 91.8     | 3.28 | 86.1     | 2.78 | 80.3     | 2.28 | 74.6     | 1.78 | 68.9     | 1.28 | 63.2     |
| 4.27 | 97.4     | 3.77 | 91.7     | 3.27 | 85.9     | 2.77 | 80.2     | 2.27 | 74.5     | 1.77 | 68.8     | 1.27 | 63.1     |
| 4.26 | 97.3     | 3.76 | 91.5     | 3.26 | 85.8     | 2.76 | 80.1     | 2.26 | 74.4     | 1.76 | 68.7     | 1.26 | 63.0     |
| 4.25 | 97.1     | 3.75 | 91.4     | 3.25 | 85.7     | 2.75 | 80.0     | 2.25 | 74.3     | 1.75 | 68.6     | 1.25 | 62.9     |
| 4.24 | 97.0     | 3.74 | 91.3     | 3.24 | 85.6     | 2.74 | 79.9     | 2.24 | 74.2     | 1.74 | 68.5     | 1.24 | 62.7     |
| 4.23 | 96.9     | 3.73 | 91.2     | 3.23 | 85.5     | 2.73 | 79.8     | 2.23 | 74.1     | 1.73 | 68.3     | 1.23 | 62.6     |
| 4.22 | 96.8     | 3.72 | 91.1     | 3.22 | 85.4     | 2.72 | 79.7     | 2.22 | 73.9     | 1.72 | 68.2     | 1.22 | 62.5     |
| 4.21 | 96.7     | 3.71 | 91.0     | 3.21 | 85.3     | 2.71 | 79.5     | 2.21 | 73.8     | 1.71 | 68.1     | 1.21 | 62.4     |
| 4.20 | 96.6     | 3.70 | 90.9     | 3.20 | 85.1     | 2.70 | 79.4     | 2.20 | 73.7     | 1.70 | 68.0     | 1.20 | 62.3     |
| 4.19 | 96.5     | 3.69 | 90.7     | 3.19 | 85.0     | 2.69 | 79.3     | 2.19 | 73.6     | 1.69 | 67.9     | 1.19 | 62.2     |
| 4.18 | 96.3     | 3.68 | 90.6     | 3.18 | 84.9     | 2.68 | 79.2     | 2.18 | 73.5     | 1.68 | 67.8     | 1.18 | 62.1     |
| 4.17 | 96.2     | 3.67 | 90.5     | 3.17 | 84.8     | 2.67 | 79.1     | 2.17 | 73.4     | 1.67 | 67.7     | 1.17 | 61.9     |
| 4.16 | 96.1     | 3.66 | 90.4     | 3.16 | 84.7     | 2.66 | 79.0     | 2.16 | 73.3     | 1.66 | 67.5     | 1.16 | 61.8     |
| 4.15 | 96.0     | 3.65 | 90.3     | 3.15 | 84.6     | 2.65 | 78.9     | 2.15 | 73.1     | 1.65 | 67.4     | 1.15 | 61.7     |
| 4.14 | 95.9     | 3.64 | 90.2     | 3.14 | 84.5     | 2.64 | 78.7     | 2.14 | 73.0     | 1.64 | 67.3     | 1.14 | 61.6     |
| 4.13 | 95.8     | 3.63 | 90.1     | 3.13 | 84.3     | 2.63 | 78.6     | 2.13 | 72.9     | 1.63 | 67.2     | 1.13 | 61.5     |
| 4.12 | 95.7     | 3.62 | 89.9     | 3.12 | 84.2     | 2.62 | 78.5     | 2.12 | 72.8     | 1.62 | 67.1     | 1.12 | 61.4     |
| 4.11 | 95.5     | 3.61 | 89.8     | 3.11 | 84.1     | 2.61 | 78.4     | 2.11 | 72.7     | 1.61 | 67.0     | 1.11 | 61.3     |
| 4.10 | 95.4     | 3.60 | 89.7     | 3.10 | 84.0     | 2.60 | 78.3     | 2.10 | 72.6     | 1.60 | 66.9     | 1.10 | 61.1     |
| 4.09 | 95.3     | 3.59 | 89.6     | 3.09 | 83.9     | 2.59 | 78.2     | 2.09 | 72.5     | 1.59 | 66.7     | 1.09 | 61.0     |
| 4.08 | 95.2     | 3.58 | 89.5     | 3.08 | 83.8     | 2.58 | 78.1     | 2.08 | 72.3     | 1.58 | 66.6     | 1.08 | 60.9     |
| 4.07 | 95.1     | 3.57 | 89.4     | 3.07 | 83.7     | 2.57 | 77.9     | 2.07 | 72.2     | 1.57 | 66.5     | 1.07 | 60.8     |
| 4.06 | 95.0     | 3.56 | 89.3     | 3.06 | 83.5     | 2.56 | 77.8     | 2.06 | 72.1     | 1.56 | 66.4     | 1.06 | 60.7     |
| 4.05 | 94.9     | 3.55 | 89.1     | 3.05 | 83.4     | 2.55 | 77.7     | 2.05 | 72.0     | 1.55 | 66.3     | 1.05 | 60.6     |
| 4.04 | 94.7     | 3.54 | 89.0     | 3.04 | 83.3     | 2.54 | 77.6     | 2.04 | 71.9     | 1.54 | 66.2     | 1.04 | 60.5     |
| 4.03 | 94.6     | 3.53 | 88.9     | 3.03 | 83.2     | 2.53 | 77.5     | 2.03 | 71.8     | 1.53 | 66.1     | 1.03 | 60.3     |
| 4.02 | 94.5     | 3.52 | 88.8     | 3.02 | 83.1     | 2.52 | 77.4     | 2.02 | 71.7     | 1.52 | 65.9     | 1.02 | 60.2     |
| 4.01 | 94.4     | 3.51 | 88.7     | 3.01 | 83.0     | 2.51 | 77.3     | 2.01 | 71.5     | 1.51 | 65.8     | 1.01 | 60.1     |
|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1.00 | 60.0     |